**숭실 사격회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숭실대학교 사격회라 칭한다.

**제2조(설치)**

본 회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사격을 통한 정신수양 인격수양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학교 홍보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선배 후배 간의 유대관계 강화에 관점을 둔다.

**제4조(활동)**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각종 대내외 경기 참여와 후배 양성을 위한 활동
2. 회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3.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활동

**제5조(존속)**

본 회의 존속기한은 1985년 3월 2일자로 시작하여 영구 존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숭실대학교 본과 대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칙 준수와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본 회의 활동에 관하여 훈련부장을 두어 지도를 받는다.

단, 훈련부장이 없을 시 본 회에서의 다른 임원이 훈련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장단**

**제9조(지위)**

1.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된다.
2. 회장단은 표결을 총괄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일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회장은 회원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제10조(임기)**

정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없다.

정 부회장의 부재 시에는 보궐선거로 진행을 요한다.

**제3장 산하 조직**

**제11조(구성)**

1. 본 회는 숭실대학교 산하 자치 활동하는 회이다.
2. 본 회의 구성은 기획부, 총무부, 훈련부로 구성한다.
3. 각 부서는 1인의 부서장을 둔다.
4. 각 부서의 장은 임원의 지위를 갖고 부서원으로 수습 임원을 둘 수 있다.
5. 전항의 수습 임원은 임원과는 별개의 지위로서 각 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회칙 제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12조(기능 및 권한)**

본 회의 각 부서는 다음 각 사항의 부서별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1. 총무부: 본 회의 회계, 회의 진행에 관한 재정 사항, 비품들의 구매 계획 담당

단, 회원 부족 시 부회장이 총무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기획홍보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의 기획, 준비를 담당
2. 훈련부: 본 회의 신입생 사격 교육 및 사격 일정 조율, 사격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회의 전반적인 물품 담당

**제4장 선출**

**제13조(자격)**

1. 본 회원 중 회장단은 3학기 등록예정자 이상으로 한다.
2. 본 회원 중 3부장은 2학기 등록예정자 이상으로 한다.
3. 본 회원 중 수습 임원은 1학기 등록자 이상으로 한다.
4.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선출 인원 부족 시 1학기 등록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회비)**

1. 회비는 학기와 학기 개강 후 3주 간에 걸쳐 납부한다.

단, 학기 중간에 가입하는 학생의 경우 가입 시에 납부한다.

1. 회비는 신입생의 경우 30,000원 재학생의 경우 2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동아리 재정상태 및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1. 회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해당 년도 임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1. 예산의 사용은 본 회 및 회원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5조(예산 집행)**

모든 행사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제16조(장부)**

1. 총무는 최우선적으로 장부 및 회비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장부는 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공개를 한다.

**제6장 회의 및 의결 내용**

**제17조(분류)**

모든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분류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매학기 정기총회 2회 이상을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2. 임원의 회의는 임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3.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내용)**

모든 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총회는 결산보고, 활동보고, 심의, 확정 등에만 소집하며 총회 실시는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원 회의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부서별 활동 및 계획을 토론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 개정 발의 및 의결 등을 한다.
3. 회의의 내용은 서기가 기록하여 회의록과 함께 보존한다.
4. 회의에서의 의견은 신입생, 재학생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 표출이 가능하다.

**제19조(의결)**

회칙 개정과 총회의 의결은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장 훈련 및 안전 수칙**

**제20조(훈련)**

사격 훈련 및 연습은 재학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훈련부장, 회장, 부회장, 재학생들이 주축으로 하여 신입생들의 사격 연습에 협조한다.

1. 훈련 및 연습은 안전수칙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2. 훈련 및 연습은 신입생의 경우 절대적으로 임원 및 재학생 선배와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3. 훈련 및 연습 시 임원 및 재학생 선배는 신입생에게 격발자세 호흡조절 장전 순서 등 기본적인 총기 지식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21조(안전)**

사격장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회원 및 사격장 출입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는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총기를 사용한 장난 행위 일체 금지
2. 사격 시 안전선 전방으로 나가는 행위 금지
3. 사격 시 표적지 이외의 조준행위 및 격발 금지
4. 순서에 의한 사격실시 및 정숙 유지
5. 사격종료 후 반드시 안전 확인
6. 허가된 물품을 제외한 전반 훈련 물품의 개인 휴대 금지, 반납
7. 사격 훈련시 인솔자의 통제 엄수

**제8장 징계**

**제22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회원인 자가 다음 사항을 범할 경우 임원 2인 이상의 제안에 의해 임원의 과반 수 이상 참석과 참석 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징계한다.

1. 본 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회의 재물이나 타 회원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본 회의 질서를 교란한 경우

**제23조(징계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구두 경고
3. 동아리방 청소
4. 사과문 작성 및 개시
5. 영구 제명
6. 정황에 따라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

본 회의 회원은 교칙을 준수한다.

**제25조**

제정된 회칙은 선포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

**제26조**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본 회의 모든 행사와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회원은 동아리 활동 의사를 묻는다

행사와 정기회의 불참에 대한 징계의 경우 사전에 적절한 사유를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조항 외**

1985.3.2 본 회칙이 발효된다.

1985.3.3 회칙 서류화 작업

1991.3.4 회칙 1차 개정

2000.3.9 회칙 2차 개정

2010.3.31 회칙 3차 개정

2014.11.13 회칙 4차 개정 당년 11.20 발효

2016.4.6 회칙 5차 개정

2023.5.24 회칙 6차 개정 즉시 발효 붉은 글씨는 최근 수정 내용

최종수정 날짜 및 수정자: 2023년 5월 24일 숭실사격회 회장 36기 주희수